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4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8. 28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8. 2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9. 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가.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또는 시설(안 제3조)

나.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·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(안 제4조)

다.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· 관리의 정기점검(안 제5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행정규제 전수조사결과 규제정비 대상으로 조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

○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완화 또는 삭제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

○ 다만, 조례의 개정은 입법의 제원칙에 적합하도록 기본적인 체계 ·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할 것이나

○ 동 조례안은 제명이 "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"로서 조례안 구성 체계에 맞게 총칙적사항(목적, 정의 등), 실체적사항(설치 및 관리 등)에 구분하여 들어가야 할 조항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제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설치관리자의 책무, 설치기준, 유지관리기준, 개선명령,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삭제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데 있어 노력이 더 필요로 하는 등 문제가 없는지?

● 답 : 일부 내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이고, 다소 문제점은 지도·점검의 원칙 아래서 행정홍보를 강화한다면 관리에 별다른 문제없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0. 9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